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홍 일 표

- (前) 사법연수원장
- (現) 변호사(법무법인 양현)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 2009년에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1기생들이 지난 1월 3일부터 4일간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지난 달에 졸업하였다. 제1기생들이 입학하던 당시에는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도 하였지만, 요즘에는 취업의 어려움이 커서 이로 인해서 로스쿨제도가 앞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을 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돌이켜 보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우리 법학계와 법조사회에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하여 수년내에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이 예비법조인 양성의 역할을 상실하고, 나아가, 기존의 80여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법과대학 및 법학과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폐지되었거나 앞으로 폐지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경력법관제, 로클럭(law clerk)제도의 도입 등 사법개혁의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렵게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기구로 발전해 나아가기 바란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전에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에 의하여 충분히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 결과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뜻에서 필자가 평소 생각하여온 문제점을 한 두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입학단계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면, 비법학전공자들이 학부에서 본래의 전공공부를 소홀히 하고 법학의 선행 학습에 몰두하는 폐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같은 법학지식에 관한 사전평가금지는 비법학전공자가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변협신문의 보도내용(2011. 10. 31.자)에 의하면, 2009학년도 1기생의 경우 법학사의 비율이 34.38%이었는데, 2011학년도 로스쿨 입학생중 법학사 비율은 49.14%로 나타났고, 앞으로 법학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지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학전공자에 대해서는 법학적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학적성시험보다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높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이지만 강도의 수업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적성이 맞지 않아 고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에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가 현재 존치하고 있고 또 로스쿨 인가 대학교에도 법학부가 아직 한시적으로 존치, 운영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법학전공자의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지식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특히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한 대학교의 법학과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선발과정에서 기초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게 되면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외의 분

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 선발시에 준수해야 할 법학과 비법학과 선발 의무비율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법학전공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가 입학초기부터 함께 같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에서 4년간 법학을 전공한 사람과 비법학전공자와 사이에는 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준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초기부터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구분 없이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법학부(3년 과정)를 졸업한 후 1년간의 법률실무과정(legal practice course)을 수료하고 나서 수습변호사로서의 직업훈련과정을 2년간 마치고 나면 일반변호사(solicitor)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비법학 전공자에게는 1년 과정의 법학전문과정(GDL)을 밟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법학전공자와 마찬가지로 법률실무과정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에 입학한 후 1년간은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의 학사 일정을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비법학 전공자의 수학기간은 3년이고, 법학전공자의 수학기간은 2년이다. 커리큘럼의 내용을 보면, 비법학 전공자의 1년차에는 법률기본과목의 기초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년차에는 법률 지식을 심화시켜 실무능력을 양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교과과정은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에 공통으로 진행된다.

생각컨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가 이수할 교과목을 일정기간 구분하여 편성하고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로스쿨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로스쿨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에 의하여 위에서 언급한 선발규정이나 교과과정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